



# 기안 용지

(전화 : 713 - 6156 )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자번호  
부록기호  
수신처  
보통기호  
시행일자

문 02124 78  
영 10.5.31

시  
장  
*[Handwritten signature]*

발부기호  
목적  
기호  
발부일련번호

발부기호  
목적  
기호  
발부일련번호

수신처

의제 7150

발신처  
발신일자  
1991. 5. 20  
통제관

기안배달지  
발배배정  
발신일자  
발신처  
발신인

발신일자

발신인

제 목 :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중 개정 규정 발령

(제 1안)

수신처 : 내부절제

제 목 : 승급심사

1.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인사사무처 규정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

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 부 : 별첨한 1부.

(제 2안)

수신처 : 홍보관

제 목 : 각 목 기재

1. 인천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제 3 안)

수 실 : 인사과장

제 목 : 훈령 발령

1. 인사 01300 - 99 (91. 5. 13.) 호외 발령임.

2.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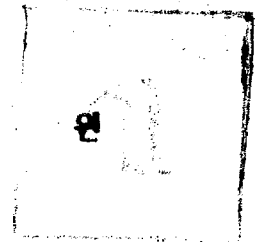
6-2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중 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이 에 원



서울특별시훈령 제5/1호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중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한다)의 승급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설치)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국장, 보건사회국장, 환경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내부국인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과보임계장이 된다

제 6조중 "보건환경연구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 "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1 )

승급심사에의하여승급하는호봉

연 구 관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 10	· "	· 11	· "	
· 14	· "	· 15	· "	
· 18	· "	· 19	· "	
· 22	· "	· 23	· "	
· 26	· "	· 27	· "	· 승급합계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2 )

평정자, 확인자

구 분	평정대상	원 장	부 장	과 장	평연구관
	평 정 자	보건사회국장	원 장	부 장	부 장
	확 인 자	부 시 장	부시장	원 장	원 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1 심사대상자란중 "대상기관"을 "대상기간"으로 "연구관, 연구사 승급심사위원장"을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연사 01300-99

731-6222

'91. 5. 13

수신 기획관리실장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개정요구

1.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요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이유및 주요개정 내용.

2. 서울특별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정 개정(안) 1부. 끝.

내무부장 김성기

내 무 국 장

		간	
1991. 5. 17	372		
		6-6	